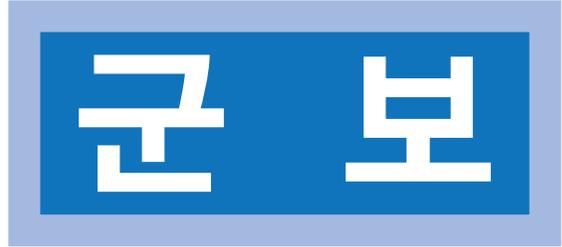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502호 2023. 1. 16. (월)

훈 령

장수군 훈령 제603호
장수군 훈령 제604호

장수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
장수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4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3-25호
장수군 공고 제2023-48호

장수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3

회 람									
--------	--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6)

장수군 훈령 제603호

장수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장수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1월 16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제6조제3항 관련)

부서별	합계	소계	행정 사무원	일반 사무원	기술 사무원	환경 미화원	도 서관 리원	청 원 경 찰	정보 원 호 산 직 림 원	
합 계	303	274	69	67	99	32	7	24	5	
본청	소 계	151	132	50	49	24	2	7	14	5
	기 획 조 정 실	3	3	2		1				
	행복지 정국	행정지원과	29	25	16	7	2		4	
		주민복지과	27	27	2	13	12			
		재무과	2	2	1	1				
		민원과	5	5	5					
		문화관광과	21	19	10	9			2	
	농산 식품	환경위생과	13	12	3	4	3	2	1	
		농업정책과	2	2	1	1				
		민생경제과	2	2	1		1			
		농산유통과	1	1	1					
		축산과	2	2	2					
		산림공원과	28	17		12	5		6	5
	의회	안전재난과	2	2	2					
건설교통과		10	10	1	2		7			
의회	의 회 사 무 과	4	3	3				1		
직속 기관	소 계	82	78	7	5	66		4		
	보 의 료 건 원	보건사업과	27	23		2	21		4	
		의료지원과	22	22	1	1	20			
	농 업 기 술 센 터	농촌지원과	22	22	4		18			
기술보급과		11	11	2	2	7				
사업소	소 계	26	20	2	8	9	1	6		
	체육말은물사업소	26	20	2	8	9	1	6		
읍면	소 계	44	44	10	5		29			
	장 수 읍	12	12	2	2		8			
	산 서 면	6	6	1	2		3			
	번 암 면	4	4	1			3			
	장 계 면	9	9	2	1		6			
	천 천 면	5	5	2			3			
	계 남 면	4	4	1			3			
계 북 면	4	4	1			3				

1. 개정이유

- 행정수요 증가분과 조직개편, 부서 정원승인 요청 등에 따른 공무원 인력수급 전망 및 인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부서별 공무원 근로자 정원 조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동사항 및 부서별 정원 조정
- 부서 명칭 변경
 - 명칭변경 : 문화체육관광과 →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 민생경제과
농축산유통과 → 농산유통과
산림과 → 산림공원과
시설관리사업소 → 체육맑은물사업소
과수과 → 기술보급과
- 부서별 정원 요구
 - 기획조정실 : 군정 사진 촬영 및 SNS 홍보용 콘텐츠 제작 인력

장수군 훈령 제604호

장수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장수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1월 16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포인트 지급) ①공무원에게 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연간 개인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는 다 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p> <p>1. ~ 3. (생 략)</p> <p>4. 삭 제</p> <p>5. 특별포인트: 공무원 중 자녀 를 출산한 직원에게 다음 각 목에 따른 출산축하포인트를 지급한다. <u>다만, 동일한 출생 자녀에 대하여 출산축하포인 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 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 한다.</u></p> <p>가. ~ 다.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6조(포인트 지급)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5. ----- ----- -----.</p> <p>-----. <단서 삭제></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1. 개정이유

- 출산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소속직원의 후생 복지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일자녀 출산포인트 지급대상자(이전년도 출산)가 부부일 경우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 (제6조)

장수군 공고 제 2023-25호

장수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행정조직에 맞는 위원회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현재 본청 국, 실, 과장 및 직속 기관의 과장, 사업소장으로 되어있는 심의위원을 변경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회의 위원 구성 변경 (안 제2조)

- 본청의 실·국장, 국 주무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심의 회의 개최사항 변경 (안 제5조)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1.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우 55634/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058(063-350-5702)

3) 전자우편(이메일) : you923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063-350-20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나. 장수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규칙 제 호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본청 국, 실, 과장 및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을 “본청의 실·국장, 국 주무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구성) 장수군 조례·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의장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u>본청 국, 실, 과장 및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이 된다.</u>	제2조 (구성) ----- ----- ----- ----- ---- <u>본청의 실·국장, 국 주무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u> ----- --.
제5조 (회의소집 및 개최) ① 심의회는 수시로 소집하며,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u>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u> 으로 개최한다. ② (생 략)	제5조 (회의소집 및 개최) ① ---- ----- ----- <u>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u> -----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출·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으로 한다.

③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장수군 공고 제 2023-48호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차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가야사만이 아닌 장수의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문체부 심의·자문에 따라 가야역사관의 명칭을 역사전시관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례내용을 운영상황에 맞춰 변경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장수군 역사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용어중 가야역사관을 역사전시관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13조)
- 역사전시관의 업무 중 전북동부지역 가야사의 자료만을 수집, 관리, 전시토록 하던 것을 지역에 한정하지 않도록 범위 확대(안 제4조)
- 휴무일 근무시간을 관람시간에서 정규근무시간으로 변경(안 제6조)

- 현장상황에 따라 휴관, 관람·입장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유료인 역사전시관 체험을 필요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비상설로 운영하는 역사관운영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하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함(안 제13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2.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우 55634/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문화관광과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327(063-350-5713)

3) 전자우편(이메일) : nostart@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063-350-23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나.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건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명칭 변경
및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조례 를 장수군
“역사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본문 중 “가야역사관”을 “역사전시관”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구성) 본문 중 장수군 “가야역사관”을 “역사전시관”으로 한다.

제4조(업무) 제1호 중 “전북동부지역 가야사”를 “가야사”로 한다.

제6조(근무방법) 제1항 중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근무는 당직근무자가
관람자 통제 및 안내, 관리를 위하여 관람시간까지 근무한다.”를 “근무
한다.” 로 한다.

제9조(관람 및 입장시간, 휴관) 제4항 중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를 “불구하고”로 한다.

제10조(관람료) 본문 중 “유료로 하며”를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본문 중 “가야역사관” 을 “역사전시관”으로 하고,
“비상설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 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임기) 본문 중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
다.”를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로 한다.

<p>제6조(근무방법)① 역사관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는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장수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의거 <u>근무하되 토요일휴무일 및 공휴일 근무는 당직근무자가 관람자 통제 및 안내, 관리를 위하여 관람시간까지 근무한다.</u></p>	<p>제6조(근무방법)① ----- ----- ----- ----- 근무한다.</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 ~ 제8조(생략)</p>	<p>제7조 ~ 제8조(현행과 같음)</p>
<p>제9조(관람 및 입장시관, 휴관)</p>	<p>제9조(관람 및 입장시관, 휴관)</p>
<p>① ~ ③ (생략)</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역사관 담당 부서장은 국민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전염병 전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u>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u> 관람시간과 입장시간 및 휴관을 조정할 수 있다.</p>	<p>④ ----- ----- ----- 불구하고 ----- ----- -----.</p>
<p>제10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역사관 내 체험시설의 체험료는 <u>유료로 하며</u> 체험수준별로 군수가 정한다.</p>	<p>제10조(관람료) ----- ----- -----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p>
<p>제11조. ~ 제12조. (생략)</p>	<p>제11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p>

제13조(위원회운영) 장수군 가야
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
원회” 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
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자문)한다.

제14조. (생략)

제15조(위원의임기)위원의 임기
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
부터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6조. ~ 제23조. (생략)

제13조(위원회운영) ----- 역사
전시관-----
-----, 다음 각 호의 -----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임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제16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